

NO. 1	<b>감사결과 처분요구서</b>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4	-	-	-	주 의(2명)

**【제 목】 수중발굴 유물 보존처리용 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1. 근거**

「물품관리법」 제18조 (재고관리)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在庫)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유독물의 관리기준) 등에 따르면 연구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활동 종사자는 이러한 안전관리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2. 지적 내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수중발굴 유물의 보존처리를 위하여 P.E.G(폴리에틸렌 글리콜) 등 170종의 보존처리용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음.

총 수량	불일치 수량			일치 수량	비고
	소계	대장>실재고	대장<실재고		
170종	97종	26종	71종	73종	*12종은 대장목록에 미등재

동 보존처리용 화학약품에 대한 재고 등 수불 현황을 확인한 결과, 170종의 약품 중 97종이 약품 수불대장과 실제 재고 수량이 일치하지 않았고, 이 중 12종의 약품은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었으며, 염산 등 242종의 약품이 인체에 유해한 약품이나 별도의 화학약품 관리 규정 없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3. 조치할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존처리용 약품 등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약품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NO.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2014	-	환 수	505,070	-

**【제 목】** 본관 해안 석축 보수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1. 근 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 2. 지적 내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4. 5. 7 ~ 2014. 9. 12까지 “본관 해안석축 보수공사”((주)☆☆건설 / 141,000,000원)를 시행하였음.

상기 공사 시행 중 현장여건에 맞게 중력식 옹벽 단면 조정(330㎡->90㎡ / 감240㎡)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1회 이루어졌으며, 설계변경 시에는 공사량의 증감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설계변경 과정에서 중력식 옹벽 단면 조정에 따른 레미콘 타설 물량 등은 감소정이 이루어졌으며, 레미콘 소운반 물량 또한 당초 128㎡에서 71㎡로 57㎡가 감소하므로 소운반 물량을 감액하여야 하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감액조정하지 않고 당초 물량 그대로 인정함에 따라 공사비를 재산정한 결과 505,070원이 과다 지급되었음.

### 3. 조치할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은 시공업체에 과다 지급된 공사비 505,070원을 환수 하시기 바랍니다.

NO.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천원)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2014	-	-	-	주 의 (2 명)

## 【제 목】 수중발굴 고선박 마도 1호선 실물복원에 관한 사항

## 1. 근 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었음.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57호 예정가격작성기준」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에 노무비 등의 물량산출 시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도록 규정되었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절대연대(1208년)가 밝혀진 유일한 고려시대 선박인 마도 1호선을 복원하여 충남 태안에 설립 예정인 서해유물보관동에 전시하여 대국민 교육용 전시자료로 활용하고자 “수중발굴 고선박 마도 1호선 실물 복원”((주)○○○ ○○연구소 / 396,090,000원)을 추진 중(2014.2.26 ~ 2014.10.31.)에 있음.

## 2. 지적 내용

## 가. 추정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수중발굴 고선박 마도 1호선 실물복원’ 물품제조 건에 대한 추정가격 결정 시 해당 건에 대한 설계내역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사업 담당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투입총인원·과업기간 등을 결정하여 적정한 추정가격 산정에 미흡하였음.

※ 추정가격 산정 시 해당 물품제조에 2,160명(12명 180일)이 투입될 것으로 인건비를 산정하였으나, 감독공무원이 제공한 작업일지를 확인한 결과 약 50%가 완성된 현재('14.9.25.)까지 투입 예정 인원의 1/5 수준인 총 400여명의 작업인원이 투입되었음.

#### 나. 마도 1호선 복원 선재 구입에 관한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마도 1호선 복원 선재 확보 및 건조를 위해 2012년부터 목재를 구입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목재를 구입하였음.

연도별	수종	수량	구입금액(원)	비고
2012.4.13	낙엽송	87본 / 27,396재	58,901,400	난간, 갑판, 가료, 보 등
2013.4.25	소나무, 참나무 소나무과 낙엽송	173본 / 20,363재	68,500,000	선수, 저판, 외판, 멩에 선미 등
2014.4.1	소나무과 낙엽송	15본 / 4,548재	11,910,000	저판, 외판
2014.9.18	소나무	18본 / 4,298재	18,271,000	외판
계			157,582,400	

목재 구입 시 선박 복원에 필요한 물량과 규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수량을 구입하여야 하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복원에 필요한 선재 확보 및 건조를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선박에 필요한 목재를 전량 구입하였으나, 2014년 선박 복원과정에서 외판 및 저판에 사용하기 위해 기 구입한 목재 규격이 실제 복원에 사용되는 규격보다 가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14년 2차례(2014.4.1., 2014.9.18.)에 걸쳐 저판 및 외판용 목재(33본 / 30,181,000원)를 추가 구입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 사실이 있음.

#### 다. 마도 1호선 복원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상기 마도 1호선 복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 완료한 “마도 1호선 실물 복원 조선공학적 분석 및 실시설계 용역”(20,000,000원 / ©©©©©©)의 설계도면에 따라 추진하여야하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설계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선박 복원 현장 확인 결과, 외판 규격 및 선미판 개수가 당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음.

<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현황 >

구 분	당초(설계 도면)	변경(실제 시공)	비고(변경 사유)
○ 외판규격 변경	3~4개 부재로 이음	5~6개 부재로 이음	외판에 사용되는 선재는 곡과 힘이 큰 선재가 필요하나 미확보
○ 선미판 개수	7단	9단	선미 좌우 보강 (메뚜기 산지 구조 연구 일환)

### 3. 조치할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은 향후 물품 제조 추정가격 산정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적정 가격을 산정하여 주시고, 재료 등 구매 시 사전에 필요 물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 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 후 추진하시기 바라며, 위 지적 내용과 같이 담당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은 “주의”를 촉구합니다.

NO.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2014	시 정	-	-	-

###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 1. 근 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지적 내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시설공사(소방, 통신 등 포함)를 실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하자검사를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한 차례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하자검사 실시 현황>

총계 (건)	하자검사 미실시		하자검사실시	비고
	기간도래 (6개월 이상)	기간미도래 (6개월미만)		
14건	9건 (하자기간 만료 3건)	5건	0건	

\* 감사기간 중 하지기간 만료 3건에 대해 하자여부 확인 결과, 특이사항 없음

#### 3. 조치할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은 미실시한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조속히 시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계약업무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시설공사 후 정기적인 하자검사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NO. 5		<b>감사결과 처분요구서</b>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2014	-	환 수	1,044,330	-

**【제 목】 용역 완료 검사에 관한 사항**

**1. 근 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함

**2. 지적 내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마도1호선 구조설계 및 조선공학적 분석 보고서 발간’ 용역에 대해 주식회사 ◇◇◇◇◇◇◇◇과 계약(계약기간 '13.10.25. ~ '13.12.6./ 계약금액 19,892,000원)하였고, '13.12.06. 완료계를 제출하였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상기 용역에 대한 검사를 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와 달리 CD 50개가 납품되지 않지 않는 등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용역을 완수한 것으로 '13.12.9. 완료조치 하였으나, 실제 납품은 '13.12.27.에 완료되어 이에 대한 지체 상금을 계산한 결과 1,044,330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하였음.

### 3. 조치할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은 미부과한 지체상금 1,044,330원을 반납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NO.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천원)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2014	-			주 의 (2명)
<b>【제 목】 구입 물품(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b>					
<p>1. 근 거</p> <p>「물품관리법」 제5조(분류)·제26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所管) 물품을 기관별·사업별 및 성질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으로써 사무에 종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p> <p>2. 지적 내용</p> <p>가. 파피루스 선 등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p> <p>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세계 전통선박 연구 등을 목적으로 2010년에 ‘파피루스 선(19,000,000원)·대나무 배(1,100,000원)·Outrigger Canoe(9,000,000원) 3종의 세계 전통배를 총 29,100,000원에 구입하였음.</p> <p>구입 후 파피루스 선을 중앙홀에서 전시·보관하다 2012.3월 실내 전시공간의 협소 등의 사유로 적절한 보관 환경을 고려치 않은 채 야외 전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보호막을 설치(설치금액 18,800,000원/계약업체 ◆◆)한 후 야외에 전시하였음</p> <p>야외 전시 3개월 후인 2012년 7월 파피루스 선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전시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2년 9월 태풍 피해를 받은 후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보관하다가, 2014년 4월에 폐기처분함</p>					

2010년 4월 구입한 파피루스 선을 2014년 4월에 폐기함으로 인해 파피루스선 구입대금(19,000,000원), 보호막 설치(18,800,000원), 보호막 보수(8,899,000원), 폐기비용(500,000원) 등 47,199,000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음

대나무 배도 또한 이동박물관 등에 활용한 후 적절한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나 수증발굴과 별관창고에 방치하는 등 선량한 물품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

#### **나. 전시품 구입 및 모형제작 후 물품 미등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전시 등을 위해 타이타닉 등 2종의 모형배(계약기간 '14.3.18.~'14.5.31./계약금액 21,450,000원)와 마도 1호선의 축소 모형(계약기간 '13.8.30.~'13.11.15./계약금액 17,380,000원)을 제작·구입하였음.

물품(전시품)을 제작·구입하였으면 적절한 관리를 위해 물품관리시스템 등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등재하지 않았음.

### **3. 조치할 사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은 향후 전시 물품 구입 및 관리에 있어 물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전시 물품 관리에 소홀한 관련자는 “주의”를 촉구합니다.